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9.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237	이건태의원 등 12인	'24.7.26.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4.8.21.)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4.11.26.)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4.12.03.)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3.1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9.0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708	서범수의의원 등 10인	'24.9.06.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24.11.13.)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4.12.03.)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3.1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9.0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9. 25.)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제한된 광역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대상을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까지 확대하여 교통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시·도지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제출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사업 완료 이후까지 광역교통시설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이 지체되어 입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고 있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범위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여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하여금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4항 및 단서 신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제7조의2제4항 중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를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이행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광역교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초로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 및 도청소재대도시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 ③ (생략)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

⑤ ~ ⑩ (생략)	<u>기 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이</u> <u>이행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u> <u>고 광역교통위원회가 인정하는</u> <u>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⑤ ~ ⑩ (현행과 같음)
-------------------	--